

# 대부업 광고 허와 실

대출이율 · 기간 · 신용등급 등 실제 광고와 달라



대부업 광고가 케이블TV,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광고는 사실과 다른 표현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해당 업체의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글/문경만(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팀) ■ 그림/이우정

## ‘40일 무이자’ 실제로는 5~10일에 불과

2007년 상반기에 ‘무이자 대출’ 광고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특정 대부업체가 행한 광고를 보면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업체가 실제로 대출 고객들에게 부여한 무이자 대출 기간은 대부분 5~10일에 불과했다.

이처럼 대출 고객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40일 무이자’만을 표현한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고객들이 모두 ‘40일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

대부중개업체들은 단순히 대부업체가 행하는 대출을 소비자들에게 중개해주는 곳이다. 그런 다음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소비자들과는 직접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 표준약관 등 일체의 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부중개업체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공정위가 보급한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준수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대부중개업체들과는 업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부중개업체들은 ‘60여개 전국은행, 저축은행, 캐피탈과 계약 체결’, ‘금융권 지정 우수 수탁업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중개업체의 광고는 자신들의 공신력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 신용등급 하락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 광고

무분별한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자 특정 대부업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희 회사에서 1건 신용조회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특정 소비자에 대해 신용 조회를 하는 경우 신용정보 회사들은 그 소비자의 신용 점수를 일정부분 하락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가 신용 조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소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마치 소비자들로 하여금 대부업체가 행하는 1건의 신용조회만으로는 자신의 신용등급이 바로 하락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토록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 대출이자율이 가장 낮은 것처럼 허위 광고

대부업체들은 자신들의 대부 조건 등에 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9조(대부조건에의 게시 등)에 의거하여 대부이자율 등을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체들은 자신이 고객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대출이자율이 대부업계에서는 가장 낮다고 하거나, 대출금을 원리금균등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실질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대부업체가 존재하고, 소비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에 따라 대출이자율이 변동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대부업체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

#### \* '최대', '최고' 등의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어

대부업체들이 '최대', '최고'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출이자율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들 광고를 사용한 업체의 경우 사전에 다른 대부업체 광고와 비교를 해보아 해당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점수 하락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 관할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대부업을 하는 사업자는 대부업법 제3조(등록)에 의거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법적 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당 행위를 당할 우려가 높다.

#### \* 대부업체 이용시 관련 법령 확인

대부업 법령에는 대출이자율 제한,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유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사전에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특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2007.10.4.)으로 대부업체가 고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이자율이 기존의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졌으므로 이를 초과한 대출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